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

■ 주진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102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진우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9. 18.
3. 회 부 일 :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이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예방적·사후적 관리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재범 가능성이 크더라도 부착명령 청구가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다만, 일정한 경우에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작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여,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개정).

III. 검토의견

1.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

□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임(안 제5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생략)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u>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u>	② ----- ----- ----- ----- ----- <u>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u>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¹⁾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유괴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인 동종재범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있음.

□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증가,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및 성범죄 등 심화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대한 대응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연간 발생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수 대비 해당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접수 대상이 된 사람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2021~2023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수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접수사건 현황>**

연도	전체 약취와 유인 범죄피해자 수	20세 이하 약취와 유인 범죄피해자 수 ²⁾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전자감독 접수 건 수
2021	251	201	1
2022	284	242	2
2023	349	289	0

자료 : 범죄분석(2022~2024), 2024 범죄예방정책통계분석

☐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검사가 재량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사가 전문가 진단 등의 과학적 사실판단, 범죄 죄질, 직업 및 환경, 범행 전후의 행적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 여부와 부착 기간을 판단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재범방지·국민보호 및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전자장치 부착법의 목적³⁾을 조화시키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검사의 1차적 판단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바, 이러한 일률적 배제가 적절한지에

2) 다만, 해당 통계를 작성하는 검찰청 범죄분석은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20세 이하로 구분·작성하여 해당 범죄피해자 수는 미성년자 유괴범죄 피해자 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수 있음.

3)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작명령을 청구하여야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은, 재범 가능성이 크더라도 부작명령 청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이나, 이를 위하여 검사의 부작명령 청구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부작명령 청구 요구권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 현행법 제5조제7항은 법원이 심리 결과 부작명령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부작명령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⁴⁾, 검사가 임의로 전자장치 부작명령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부작명령 청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셋째, 전자장치 부작명령 적용대상 범죄인 특정범죄 중에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만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 다른 특정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령, 살인범죄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함께 습벽 등 다른

4) 제5조(전자장치 부작명령의 청구)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작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작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요건없이 재범의 위험성만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⁵⁾ 하고 있는데, 살인범죄에 비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5)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재범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동종 재범 이외의 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위험성 판단에 기해 부착명령 청구 여부에 대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부인하는 개정안의 실익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75

